

구 보

◆ 차 례 ◆

고 시

-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12호 :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<이면없음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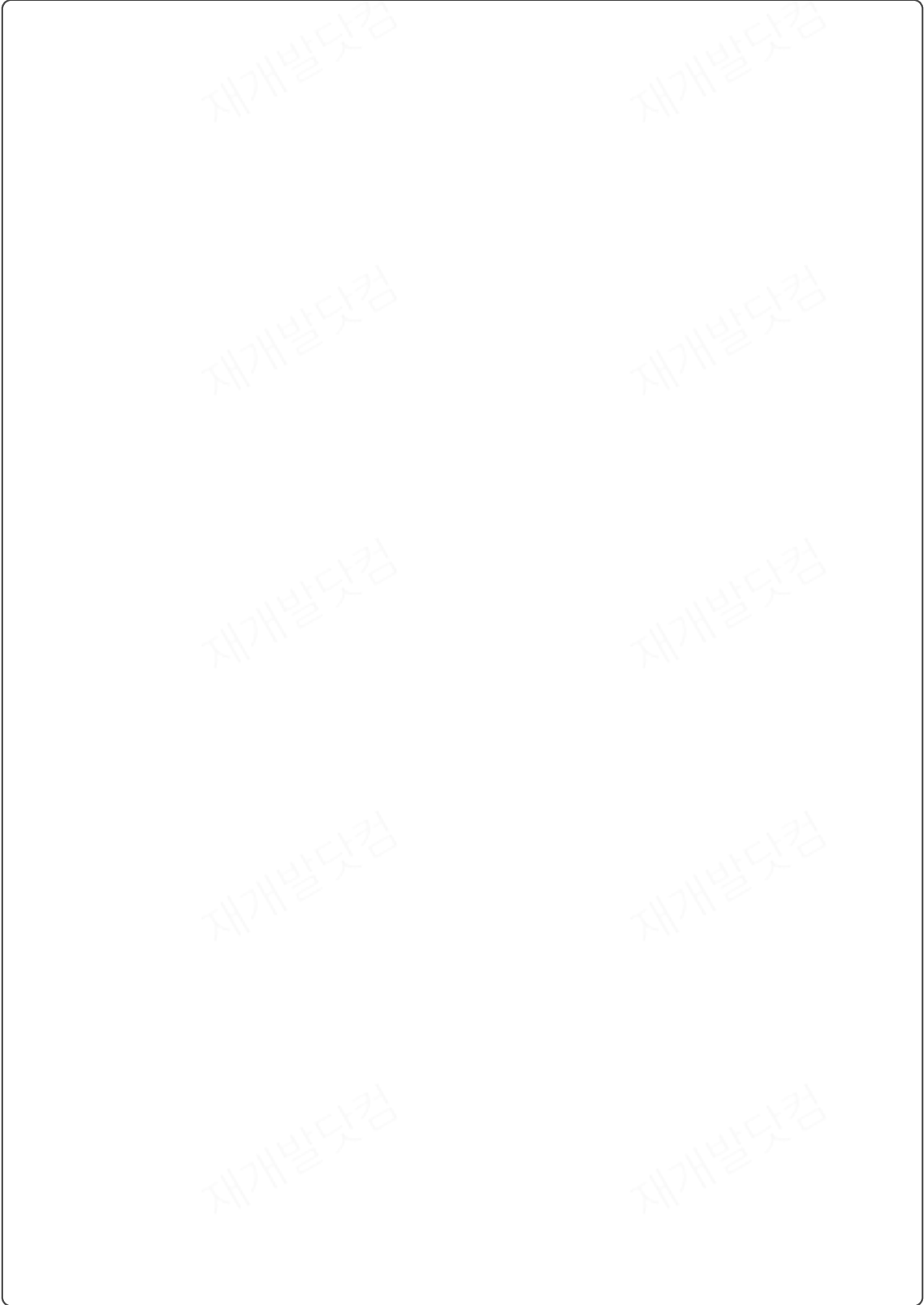
공 략												

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서 초 구

※ 이 구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(<http://www.seocho.go.kr>-공개행정-서초전자구보)

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 - 12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따라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2.10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-8 외 2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1,228.8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대표 김영래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(반포동, 삼호가든맨션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.2.9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30,983.6㎡

2) 지상34층/지하3층, 아파트6개동(835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(상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
	계	60㎡ 미만	85㎡ 미만	98㎡ 이상~114㎡ 미만	114㎡ 이상
계	835	278	397	133	27
토지등소유자	492	75	270	125	22
일반분양	219	82	125	7	5
보류지	3	-	2	1	-
재건축소형(임대)	121	121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 설 : 도로 245.2㎡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이주완료일로부터 4개월

6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